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칙

[동아리연합회 회칙] [일부개정 2026.0 5 .20.]

제정 추정불가 〈제정〉 개정 1999.03.31.〈일부개정〉 개정 2001.9 〈일부개정〉 개정 2006.06.07.〈일부개정〉 개정 2011.06.08.〈전부개정〉
개정 2013.12.04.〈일부개정〉 개정 2014.05.28.〈일부개정〉 개정 2014.12.01.〈일부개정〉 개정 2015.06.02.〈전부개정〉 개정 2015.12.01.〈일부개정〉
개정 2016.05.31.〈일부개정〉 개정 2016.12.02.〈일부개정〉 개정 2017.12.21.〈일부개정〉 개정 2018.04.12.〈일부개정〉 개정 2019.05.01.〈일부개정〉
개정 2020.07.15.〈일부개정〉 개정 2020.09.23.〈일부개정〉 개정 2021.04.07.〈일부개정〉 개정 2021.10.06.〈일부개정〉 개정 2021.12.29.〈일부개정〉
개정 2022.03.16.〈일부개정〉 개정 2022.06.08.〈일부개정〉 개정 2022.09.21.〈일부개정〉 개정 2023.03.22.〈일부개정〉 개정 2025.02.24.〈일부개정〉
개정 2025.03.26.〈일부개정〉 개정 2025.06.04.〈일부개정〉 개정 2025.12.05.〈일부개정〉 개정 2026.03.02.〈일부개정〉 개정 2026.0 5 .20.〈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 3

제 2 장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 4

제 3 장 의사결정기구

제 1 절 통칙 ····· 5
제 2 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 6
제 3 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7
제 4 절 운영위원회 ····· 10

제 4 장 동아리연합회장단 ····· 13

제 5 장 집행기구

제 1 절 집행위원회 ····· 15
제 2 절 비상대책위원회 ····· 16

제 6 장 독립기구 ····· 18

제 6 장 분과

제 1 절 분과 및 분과위원회 ····· 20
제 2 절 분과위원장 ····· 21

제 7 장 중앙동아리 ····· 23

제 8 장 재정

제 1 절 재정 운용 통칙 ····· 24
제 2 절 자치회비 회계 ····· 25
제 3 절 교비 회계 ····· 26

제 9 장 중앙동아리 등록

제 1 절 등록갱신 ····· 27
제 2 절 명칭변경 ····· 28
제 3 절 신규등록 및 가인준 ····· 28

제 4 절 정인준 ····· 30
제 5 절 등록해지····· 31

제 10 장 중앙동아리 지원

제 1 절 지원의 종류와 원칙 ····· 31
제 2 절 지원의 절차와 정산 ····· 32

제 11 장 공간 운영

제 1 절 배정공간 ····· 32
제 2 절 대여공간 ····· 34

제 12 장 징계 ····· 35

제 13 장 선거 ····· 37

제 14 장 회칙·세칙·규칙

제 1 절 회칙 제·개정 ····· 39
제 2 절 세칙·규칙·분과 규칙 ····· 40
제 3 절 해석·규정집 ····· 41

부 칙 ····· 42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本會)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등록된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① 본회는 중앙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중앙동아리 구성원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대학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구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모든 중앙동아리 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중앙동아리 구성원들의 완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회는 학교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원과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제 3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 4 조(자치활동)

①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양·문화·예술·정치·취미·학술·체육 등의 학생동아리 자치활동을 한다.

② 본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는 그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으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5 조(구성 및 기구)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별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를 둔다.

1. 의사결정기구로는 동아리연합회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 3 장 「의사 결정기구」에서 정한다.
2. 집행기구로는 집행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 5 장「집행기구」에서 정한다.
3. 산하기구 및 단체로는 분과와 분과위원회 그리고 중앙동아리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 6 장 「분과」와 제 7 장「 중앙동아리」에서 정한다.

제 6 조(학교 운영 활동)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중앙동아리의 활동에 관련된 주요 사항
2. 중앙동아리와 중앙동아리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 본회는 본회에 참여하는 학교 기구 혹은 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사무처리)

①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② 본회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처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8 조(기록물관리)

①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기록물 관리를 의무화하며 이는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역사적 근거자료로써의 역할을 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기록물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9 조(공간운영)

① 본회와 본회 소속의 모든 단위는 본회의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 11 장「공간운영」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제 10 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학생 중 본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회원명부에 등록된 모든 중앙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된다.
③ 졸업·자퇴·퇴학·편입 등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 및 일반휴학생으로서 본회에 제출하는 중앙동아리 등록서류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하며, 한 학기의 기준은 해당 학기 개강 날 부터 다음 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② 준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군휴학·유학·졸업유예생·제적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하며 제 12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단, 제 12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2 항에 의한 행위로 인한 제적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집행위원이 중앙동아리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한 업무 개시 시점부터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제 2 항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 본회의 집행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당선 확정 시점으로부터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제 1 항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12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성적 지향성·성 정체성·국적·인

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학생자치활동, 중앙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의사표시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교양·문화·예술·정치·취미·학술·체육 등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거한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중앙동아리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단결권을 행사하여 저항할 의무를 진다.

⑦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13 조(대표자의 책임)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분과위원장,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는 본 회의 대표자로서 본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의사결정기구

제 1 절 통칙

제 14 조(기본이념)

본 회의 의결기구는 본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 15 조(의결기구의 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 16 조(의장)

①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부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사무 · 재정)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② 안건의 표결은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하며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도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기권 없이 재차 표결한다.

단, 기권 없이 진행된 재표결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 18 조(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② 안건의 표결은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하며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도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기권 없이 재차 표결한다. 단, 기권 없이 진행된 재표결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 19 조(방청 · 발언권)

① 본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해당 의결기구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 및 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 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0 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회의진행세칙」을 준용한다. 단, 안건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제 18 조(안건의 의결)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 21 조(지위)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상징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 22 조(구성)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23 조(의장)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장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회장단 모두가 사고일 경우 운영위원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24 조(소집)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의해 동아리연합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3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정회원 및 준회원 100 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연서 제출일 기준 10 일 후 30 일 이내)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분과 및 중앙동아리,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총회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개의일시는 소집요구 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개의희망일시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 25 조(소집 공고)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일시 최소 7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제 2 항에 의한 공고문은 교내에 설치된 게시판 4 곳 이상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26 조(개의 및 의결)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개의 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이라 함은 등록서류에 등재된 회원만을 인정한다.

1. 서로 다른 3 개 이상의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 회원의 참석
2. 재적 중앙동아리 수 3 분의 1 이상 중앙동아리 회원의 참석
3. 본 회 등록 서류에 등재된 정회원 · 준회원 300 인 이상의 참석

제 27 조(권한)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 회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 및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의장이 소집공고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제 24 조(소집) 제 2 항의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된 안건
3. 기타 해당 총회 진행 도중에 발의된 안건

②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련된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제 28 조(안건위임)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시에는 모든 안건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자동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 29 조(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본 회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 30 조(구성)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31 조(대의원)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31 조(대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동아리연합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3.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회장)

제 32 조(대의원의 의무)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②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못하게 될 경우 본회에 제출한 회원 명단에 등재된 회원을 대리인으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장은 대리인을 파견할 수 없다.

③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결석, 지각, 조퇴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청가서라고 한다. 청가서는 결석계, 지각계, 조퇴계로 세분한다.

④ 중앙동아리는 대리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석계를 제출한다.

⑤ 모든 청가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개회일시 3 일 전후로 제출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모든 청가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폐회 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대의원은 청가서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3 조(징계)

① 대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했으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 회를 부과한다.

② 대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 회를 부과하며 해당 중앙동아리는 사과문을 게시한다.

③ 대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석을 한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경고 1 회를 부과하며 해당 중앙동아리는 사과문을 게시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청가서를 제출했으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사과문을 게시하며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한 경우 사과문 게시와 함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징계를 부과한다.

⑤ 사과문은 징계 확정 이후 48 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며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사과문을 동아리연합회가 관리하는 SNS 에 게시한다. 사과문 미제출 시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 회를 부과한다. 분과위원장이 사과문을 미제출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징계를 부과한다.

제 34 조(의장)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부의장을 두지 않는다.

② 동아리연합회장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동아리연합회장단 모두 사고이거나, 혹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 35 조(소집)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정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임시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비상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 학기 1 회, 1 년 총 2 회에 걸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4 월, 10 월의 한 달 전후 범위 내에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개의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시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운영위원회 2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⑤ 제 4 항에 따른 소집요구를 받은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이때 개의일시는 연서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개의희망일시에서 3 일 이상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⑥ 비상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개의 및 의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2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37 조(동아리연합회 총회 관련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24 조(소집) 제 1 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해당 동아리연합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 38 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관련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34 조(의장)에 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임시의장단을 인준할 수 있다.

제 39 조(동아리연합회장단 관련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73 조(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권한) 에 의하여 본회의 외부 단체 가입 및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제 40 조(분과 및 분과위원회 관련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분과의 신설 및 통폐합, 명칭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1 조(중앙동아리 인준 관련 권한)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신규등록 동아리의 가인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가인준 동아리의 정인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기존 동아리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중앙동아리 인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9 장 「중앙동아리 등록」에서 정한다.

제 42 조(집행위원회 관련 권한)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76 조(구성) 제 3 항에 의하여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을 인준할 수 있다.
②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79 조(업무)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하여 보고된 본회의 결산보고서와 예산안 및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받는다.
③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3 조(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8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 3 항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을 인준할 수 있다.

제 44 조(재정 관련 권한)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108 조(의무) 제 4 항, 제 114 조(예산)에 의하여 본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정·감사 관련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재정·감사운영세칙」 을 준용한다.

제 45 조(회칙·세칙·분과규칙 관련 권한)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본회의 모든 세칙·규칙·분과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6 조(징계에 관한 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 11 장 「징계」에 의거하여 각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 47 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진행)
기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회의진행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 48 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행정적 실무를 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제 49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50 조(의장)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한다.
단,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시 부의장을 두지 않는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동아리연합회장단 모두 사고 일 때, 혹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운영위원 중 2 인이 의장단 직을 수행한다.

제 51 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비상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비상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 52 조(개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3 조(의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본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 할 의무를 진다.

제 54 조(동아리연합회 총회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제 23 조(의장)에 의하여 총회 의장단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단을 인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25 조(소집공고)에 의하여 총회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제 55 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제 33 조(의장)에 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단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단을 인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35 조(소집) 제 5 항에 의하여 임시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5 조(소집) 제 3 항에 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제 56 조(동아리연합회장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본회를 대변한 대외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본회 차원의 협의문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제 74 조(탄핵소추)에 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일시를 결정한다.

제 57 조(집행위원회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제 79 조(업무)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하여 보고된 본회의 결산보고서와 예산안·결산 및 본회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 58 조(분과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분과 명칭 변경 관련 회칙 개정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회칙 개정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59 조(분과편제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중앙동아리의 분과 이동 및 조정을 심의하여 편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 60 조(중앙동아리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앙동아리의 명칭 변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 61 조(등록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중앙동아리의 등록 갱신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등록 갱신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동아리의 실제 활동 여부, 회원 명부 및 지도교수 서명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신규 중앙동아리의 등록 요건을 심의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가인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가인준 동아리의 등록 요건을 심의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정인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중앙동아리 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제 9 장 「중앙동아리 등록」에 따른다.

제 62 조(징계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중앙동아리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하거나 활동이 정지된 중앙동아리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조사위원장은 해당 동아리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원장 중 간선으로 선출한다.
2. 조사위원은 해당 동아리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 인 이상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중앙동아리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중앙동아리 징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 12 장「징계」에 따른다.

제 63 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제 84 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 2 항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4 조(특별위원회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연구·논의·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5 조(재정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제 114 조(예산)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본회의 상반기 및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중앙동아리가 제출한 행사허가원의 교비 지원금 내역을 심의 의결하여 학교 당국에 제출한다.

제 66 조(선거 관련 권한)

운영위원회는 제 170 조(시기) 제 2 항 및 제 173 조(보궐선거)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및 보궐선거 시행 일시를 결정하고 제 172 조(선거관리위원회) 제 3 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선거와 관련된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7 조(회칙·세칙·규칙·분과규칙 관련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제 176 조(제·개정안 발의) 제 1 항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76 조(제·개정안 발의) 제 1 항, 제 166 조(제·개정안 심의) 제 1 항 및 제 184 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제 2 항에 의하여 회칙·세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심의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 188 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제 2 항에 의하여 회칙 해석을 주 안건으로 하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동아리연합회장단

제 68 조(동아리연합회장의 지위)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모든 중앙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동아리연합회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학교 당국과의 회의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체 중앙동아리 및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로 참석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장은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④ 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사고일 경우 운영위원회가, 동아리연합회장단 모두 궐위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9 조(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지위)

①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사고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위원장 중 1 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일 경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0 조(동아리연합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임기)

①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는 당선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11 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를 3 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모두 12 월 31 일 이후 궐위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 10 조 2 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가 연장된 이후 3 월 동아리연합회장단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출할 때 까지로 연장한다.

제 71 조(중임)

① 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직을 중임할 수 없다.
③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가 동아리연합회장이 되었을 경우에도 동아리연합회장 직을 2 회 중임한 것으로 본다.

제 72 조(동아리연합회장단의 책임)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본회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동아리연합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본 회가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정의구현에 기여한다.
④ 동아리연합회장단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 문화, 체육 활동과 중앙동아리활동 및 제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본회 모든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⑥ 동아리연합회장단은 후임 회장단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후임 회장단의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제 73 조(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권한)

① 집행위원회 각 국서 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동아리연합회 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③ 본 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본 회 소속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단, 구체적 발의 요건은 제 11 장「징계」에 따른다.
⑤ 동아리연합회장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⑦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변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협의문 작성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4 조(사퇴)

① 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사퇴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직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제 75 조(탄핵소추)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의될 수 있으며 연서는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3 분의 2 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정회원 10 분의 1 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발의인의 이름, 소속 중앙동아리,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발의자

④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탄핵소추안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직무를 정지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그 즉시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일시를 결정한다.

⑥ 제 5 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개의 및 시행일시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하며 제 35 조(소집)에의하여 공고한다.

⑦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⑧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 인이 아닌 2 인 전체를 대상으로만 발의 할 수 있다.

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 5 장 집행기구

제 1 절 집행위원회

제 76 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77 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임명하되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78 조(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한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설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개진권을 갖는다.

④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9 조(국서)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국서를 편제할 수 있다. 단, 모든 편제는 국서를 중심으로 하되 국서 산하에 다른 형태의 편제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해 편제된 각 국서에는 필요에 따라 국장과 차장 및 국원을 둘 수 있다.

제 80 조(업무)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외에도 동아리연합회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의 개의 및 시행을 준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결산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동아리연합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기 집행위원회는 차기 집행위원회를 위해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81 조(집행위원회 회의)

① 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비상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 회의의 업무·권한·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 2 절 비상대책위원회

제 82 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위원회가 궐위될 경우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 83 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 84 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2.동아리연합회장단 두 명 모두가 궐위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 일이 넘지 않을 경우
3.동아리연합회장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 일이 넘지 않을 경우
4.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제 85 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 84 조(구성)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48 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11 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 당해 학기의 모든 분과위원장 선거가 종료된 후 7 일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11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운영위원 예정자 전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 인으로 한다. 단, 11 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운영위원 중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호선된 1 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 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 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⑥ 제 1, 2 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한다.

⑦ 제 1, 2 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 일 이내에 실시한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 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 86 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회 정회원으로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직을 6 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 립위원회 위원 3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 인 이상의 추천 을 받은 자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20 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11 월 선거 무산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익년 1 월 1 일 이후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비상대책설립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87 조(비상대책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그 즉시 모든 운영위원이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 88 조(임시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제 5 장 「집행기구」 제 1 절 「집행위원회」를 준용한다.

제 89 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0조(지위)

①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지속적인 논의를 요하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운영기구이다

②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본회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기구,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 받는다.

제 6 장 독립기구

제91조(구성)

본회의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로 분류된다.

1.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제92조(성립요건)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할 경우
2. 해당 기구의 업무가 정기적인 활동을 요하는 경우
3. 해당 기구의 업무가 반드시 그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경우

제93조(독립기구 인준 요청 방식)

독립기구 인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준요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독립기구 인준 요청서
2. 회원명부
3. 소개서
4. 활동 계획서
5. 동아리연합회 회칙 준수서약서
6. 해당 기구의 회칙

제9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독립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해당 단체가 제92조(성립요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93조(독립기구 인준 요청 방식)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지를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독립기구 인준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운영위원회는 안건과 함께 제93조(독립기구 인준 요청 방식)의 제출서류들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95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인준)

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9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독립기구 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독립기구가 인준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인준안이 통과되고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독립기구의 기구명
2. 해당 독립기구 기구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해당 독립기구의 소개

제96조(의무 및 권한)

①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그 인준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업무의 특별성이 고려된 자체적인 운영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활동하는 영역에 한하여 권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본 회의 모든 회원과 제5조(구성 및 기구)에 해당하는 본회의 모든 단위 및 기구에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가 행사하는 권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회원 및 기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장)

①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장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하며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를 대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장은 해당 회칙에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장의 선출 방법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장은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8조(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 구성원)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구성원은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회칙을 기반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99조(해소)

①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소될 수 있다. 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소될 수 없다.

1. 그 업무상의 목적을 다한 경우
2.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해소가 결정되면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해소안이 통과된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기구명
2.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해소 결정 사유

제100조(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 회칙)

①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는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회칙을 제정하여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가 해당 동아리연합회 독립기구의 회칙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제2항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분과

제 1 절 분과 및 분과위원회

제 90 조(분과)

① 본 회에 속한 중앙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중앙동아리끼리의 연합조직을 분과라고 한다.

② 분과는 본 회의 산하기구로 둔다.

③ 본 회 산하의 분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공연분과
2. 생활문화분과
3. 응용학술분과
4. 인문사회분과
5. 종교&봉사분과
6. 체육 1 분과
7. 체육 2 분과

④ 중앙동아리의 소속 분과 결정에 관하여는 중앙동아리 편제규칙을 통하여 따로 정한다.

제 91 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각 중앙동아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 분과의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제 92 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로 한다.

제 93 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 분과위원회 회의와 임시 분과위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분과위원회 회의는 매학기 1 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을 요할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분과위원회 회의 및 임시분과위원회 회의에 무단 조퇴, 무단 지각, 무단 결석 시 받는 징계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무단 조퇴, 무단 지각, 무단 결석 시 받는 징계와 동일하다.

제 94 조(권한)

① 각 분과에 속한 중앙동아리의 제반활동을 심의,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분담하고 주관할 수 있다.

③ 분과의 연합사업을 주관하며 예산 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신규 중앙동아리의 등록을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해당 분과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의 주의, 경고, 제명 징계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95 조(분과규칙)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중앙동아리간의 협력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분과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분과규칙의 제·개정은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며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하며,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분과규칙은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로 해당 규칙을 개정, 삭제하거나 규칙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분과위원장

제 96 조(분과위원장의 지위)

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학교 당국과의 회의에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중앙동아리 및 해당 분과위원회의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집행위원 중 1 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어 분과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집행위원 중 1 인을 각 호의 투표를 통하여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2. 분과회의

제 108 조(분과위원장의 임기)

①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투표로 당선된 경우는 당선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11 월 분과위원장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3 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사퇴는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8 조(분과위원장 관련 권한)

① 분과 회의는 제 95 조(분과위원장의 지위) 제 5 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집행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선거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중 한 명 이상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다.
③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출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4 명이하일 경우

제 111 조(중임)

① 원칙적으로 분과위원장의 중임을 금지한다. 단, 같은 분과위원장 직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칙 제 110조(인준 분과위원장)에 의하여, 인준 분과위원장은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분과위원장 직을 맡을 수 없다.

제 100 조(분과위원장의 책임)

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중앙동아리 및 소속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본 회가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정의구현에 기여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 문화, 체육 활동과 중앙동아리활동 및 제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후임 분과위원장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제 101 조(분과위원장의 권한)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특성에 맞는 제반활동을 주관하고 소속 중앙동아리의 행사지원 계획 등을 심의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102 조(탄핵소추)

① 분과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의될 수 있으며 연서는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해당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 정회원 10 분의 1 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발의인의 이름, 소속 동아리,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발의자

③ 분과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탄핵소추안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그 즉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일시를 결정한다.

⑤ 제 5 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개의 및 시행일시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하며 제 35 조(소집)에 의하여 공고한다.

⑥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⑦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 110조(인준 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 직위가 공석일 경우,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본회 집행위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를 '인준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② 전항의 투표는 분과위원회 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선거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중 한 명 이상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다.

③ 인준 분과위원장은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장 선거 또는 보궐 선거를 통해 분과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인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⑤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인준 분과위원장이 사퇴하지 아니하는 한, 인준 분과위원장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한다

제 114조(분과위원장의 사퇴)

① 분과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퇴 의사와 사유를 표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의 사퇴는 분과위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투표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중 한 명 이상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다.

③ 분과위원장의 사퇴는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99조(인준 분과위원장)에 의하여 전임 분과위원장의 사퇴 즉시 본 회 집행위원 중 새로운 분과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는 분과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 7 장 중앙동아리

제 103 조(지위)

중앙동아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과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본 회 산하 각 분과에 소속된 취미, 학술,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봉사, 체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단체이다.

제 104 조(명칭)

본 회가 주관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등록되고 본회 산하 분과에 소속된 정인준 자치단체만을 중앙동아리라고 칭한다. 단, 가인준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에 준하는 지위를 갖되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한다.

제 105 조(회원)

중앙동아리의 회원 모집과 구성은 중앙동아리가 자유롭게 실시한다.

제 106 조(구성)

중앙동아리의 정기적인 활동 및 각종 의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동아리 회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 107 조(대표자 및 임원)

① 중앙동아리의 대표자와 임원은 중앙동아리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회의체계에서 각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대표자 1 인을 본회의 회의체계에 출석시킬 의무를 진

다.

③ 제 2 항의 대표자를 본회 내에서 중앙동아리 회장이라고 칭하며, 반드시 등록 서류에 기재된 자이어야 한다.

④ 각 중앙동아리는 대표자가 변경될 시,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본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통지하는 서류를 각 분과위원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각 분과위원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접수되는 즉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일을 제1일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종강일 다음 날부터 차기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차기 학기 개강일을 제1일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8 조(재정)

① 중앙동아리의 재정은 자체 재정과 교비 지원금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동아리의 자체 재정은 각 중앙동아리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교비지원금의 경우 제 8 장 「재정」에 따라야한다.

제 109 조(권리와 의무)

①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운영과 학생자치활동, 중앙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의사표시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② 중앙동아리는 본회를 경유하여 교비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중앙동아리는 활동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교양·문화·예술·정치·취미·학술·종교·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

④ 중앙동아리는 본회와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중앙동아리는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중앙동아리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단결권을 행사하여 저항할 의무를 진다.

⑥ 중앙동아리는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⑦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회의체계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진다.

⑧ 중앙동아리는 교비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증빙자료 사본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⑨ 중앙동아리는 본회에 제출한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서류의 활동내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진행할 의무와 다른 중앙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목적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 8 장 재정

제 1 장 재정 운영 통칙

제 110 조(의무)

① 본 회와 집행위원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과 본회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본회의 재정은 수익을 목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수익은 본회 재정에 귀속된다.

④ 본회의 예·결산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제 111 조(현금 및 현금성자산)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교비지원금,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사업에 의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익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되며 수익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2 조(관리)

① 본회의 모든 자산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다.

제 113 조(학교 교비 지원금)

① 교비는 학교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다.

② 본 회 및 산하 중앙동아리는 교비 지원금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4 조(자치회비)

① 자치회비의 수금·보관·배분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한다.

② 자치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 2 절 자치회비 회계

제 115 조(회계연도)

① 자치회비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회기를 4 분기로 구분하고 1 분기와 2 분기를 상반기로, 3 분기와 4 분기를 하반기로 구분한다.

1. 1 분기: 1 월 1 일부터 1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 분기: 1 학기 개강일부터 1 학기 종강일까지
3. 3 분기: 1 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 분기: 2 학기 개강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② 본회의 재정은 각 분기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한다.

③ 각 분기당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 116 조(예산)

① 본회의 상반기 예산안은 상반기 개시 10 일 전부터 상반기 개시 후 12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때 상반기 예산편성권은 11 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당선자가 갖는다.

② 본회의 하반기 예산안은 하반기 개시 10 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을 위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 117 조(예산의 가집행과 추가경정예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

1.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안건이 상정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성사되지 못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금 2,000,000 원 한도 내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예산안을 부결하였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통해 책정된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
3. 상반기 개시 후 12 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금 1,000,000 원 한도 내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118 조(결산)

결산은 각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별·재원별 결산을 병행한다.

제 3 절 교비회계

제 119 조(교비배분)

① 교비는 본회의 중앙 교비, 중앙동아리 행사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반기 개시 10 일 이전에 각 항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③ 본 회의 교비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편성한다.

1. 각 중앙동아리가 사용한 행사 지원금 총액의 3 년 평균을 행사지원금으로 책정
2. 해당년도 전체 교비에서 제 1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동아리연합회 중앙교비로 책정

④ 각 중앙동아리 행사 지원금은 상반기 개시 10 일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제 3 항 제 1 호의 금액을 정인준 중앙동아리의 개수로 나눈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 한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⑤ 교비배분의 우선순위는 중앙동아리 행사 지원금, 동아리연합회 중앙교비 순으로 하며 선순위의 교비가 부족할 경우 후순위의 교비를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본회 중앙교비는 반드시 1 년 총 교비의 30% 이상 금액이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 120 조(회계연도)

① 교비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회기를 4 분기로 구분하고 1 분기와 2 분기를 상반기로, 3 분기와 4 분기를 하반기로 구분한다.

1. 1 분기: 1 월 1 일부터 1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 분기: 1 학기 개강일부터 1 학기 종강일까지
3. 3 분기: 1 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 분기: 2 학기 개강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② 본회의 재정은 각 분기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한다.

제 121 조(예산)

① 본회의 상반기 교비 예산안은 상반기 개시 10 일 전부터 상반기 개시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

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때 상반기 예산편성권은 11 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당선자가 갖는다.
② 본회의 하반기 교비 예산안은 하반기 개시 10 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의 교비 예산을 편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을 위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 122 조(결산)

① 각 중앙동아리의 교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결산 및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10 장 「중앙동아리 지원」 제 2 절 「지원의 절차와 정산」에 따른다.
② 교비 결산은 각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별·재원별 결산을 병행한다. ③ 교비 결산의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한다.

1. 1 분기 교비 결산 : 상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2. 2, 3 분기 교비 결산 : 하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3. 4 분기 교비 결산 :차기연도 상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 9 장 중앙동아리 등록

제 1 절 등록갱신

제 123 조(정의)

등록 갱신이라 함은 전년도에 정인준 상태를 득한 중앙동아리가 기존의 인준상태를 유지하고, 중앙동아리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절차에 따라 등록상태를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124 조 (등록 갱신 요건)

① 동아리 등록 및 갱신은 본 회가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만 유효하다.
② 중앙동아리는 서로 다른 3 개 이상의 단과대학· 독립학부에 소속된 15 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15 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일반휴학생이 아닌 군 휴학생(일반휴학생은 15 인에 포함한다.)
2.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유학생
3. 졸업유예(대기)생
4. 교환 · 방문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
5. 모성보호휴학생
6. 창업휴학생
7. 특별휴학생

③ 중앙동아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목표와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5 조 (등록 갱신 서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서류 1 부 (본 회 소정양식)
2. 15 인 이상 회원명단 1 부
3. 전년도 동아리 활동 보고서와 당년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각 1 부

제 126 조 (지도교수)

중앙동아리의 지도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의 전임교원만을 인정한다.

제 127 조 (기간)

① 등록갱신은 매년 1 학기 시작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하며, 서류 제출은 공고로부터 2 주후까지로 한다.
② 등록갱신은 1 년에 1 회 실시하며, 회원명부의 경우 2 학기 개강 이후에도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 128 조(심의)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 갱신 서류 마감 이후 14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등록 갱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등록 갱신 심의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중앙동아리 활동 목적 및 내용 점검, 전년도 활동계획서와 비교대조
2. 제출된 회원 명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적생 명부 대조
3. 지도교수의 존재 여부 및 전임교원 여부 확인
4. 당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③ 운영위원회는 각 중앙동아리의 심의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심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동아리 소속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2 절 명칭변경

제 129 조 (원칙)

① 중앙동아리의 명칭 변경은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중앙동아리의 명칭 변경은 해당 중앙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목적을 현저하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0 조(절차)

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앙동아리는 소속 분과의 분과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1. 명칭 변경의 사유와 목적
2. 명칭 변경으로 인한 중앙동아리 활동 내용의 변경 사항
3. 등록 갱신 시 제출한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 과반수의 서명
② 명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중앙동아리 소속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명칭 변경의 요청 접수 10 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명칭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명칭 변경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분과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1 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해당 분과원회에서 명칭 변경안이 의결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명칭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의결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③ 명칭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동아리연합회장은 의결 후 3 일 이내에 학교 당국에 해당 동아리의 명칭 변경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신규등록 및 가인준

제 132 조 (정의)

신규등록이라 함은 중앙동아리가 아닌 소모임이 중앙동아리 자격을 얻기 위해 절차에 따라 등록을 거쳐 가인준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제 133 조(기간)

운영위원회는 매년 2 학기 개강 이후 신규등록을 공고한다.

제 134 조(유보)

운영위원회는 중앙동아리의 총 개수 및 교비지원금 분배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의 신규 등록을 유보하는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단, 본 조의 의결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5 조(요건)

① 신규등록 자격은 1 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모임에게 주어진다.
② 신규등록 대상 소모임의 활동목적과 내용이 기존 중앙동아리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서로 다른 3 개 이상의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15 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36 조(구비서류)

신규 등록 동아리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모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본 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설립 목적, 동아리 회칙, 1 년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2. 서로 다른 3 개 이상의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15 인 이상의 회원 명부
3. 소속 희망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추천서
4. 본 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 소속 1 개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또는 해당 분과 모든 중앙동아리회장의 추천서

제 137 조(분과위원회 심의)

① 전조에 의거한 서류가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분

과위원장은 7 일 이내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규등록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8 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해당 분과위원회의 신규등록 안건이 의결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7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신규등록 안건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9 조(의결 및 가인준)

①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신규등록 안건은 하반기 정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신규등록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해당 소모임을 가인준 동아리라고 칭한다.
④ 신규등록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소모임은 그 다음해 신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40 조(가인준 동아리의 의무)

① 가인준 동아리는 한 학기 동안 가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심의 과정과 다른 활동목적과 내용을 가지거나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가인준 자격을 취소하고 제명할 수 있다.
② 가인준 동아리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은 모든 회의체계에서 부여되지 아니한다.
③ 가인준 동아리에게는 교비 지원금과 동아리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회 주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의 지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④ 가인준 동아리는 본 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절 정인준

제 141 조(정의)

정인준이라 함은 가인준 상태의 동아리가 최소 1 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 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식 중앙동아리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142조(등록 공고 및 구비서류)

① 매년 2학기 개강 전일을 기준으로 동아리연합회가 제공 가능한 소유 공실이 1개 이상일 때 정인준 등록 공고를 게시한다.
② 정인준을 받고자하는 가인준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설립 목적, 동아리 회칙, 1년간 활동내용을 담은 보고서
2. 서로 다른 3개이상의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15인 이상의 회원명부
3. 소속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추천서
4. 본 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 소속 1개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제 143 조(분과위원회 심의)

① 제 140 조에 의거한 서류가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즉시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은 7 일 이내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인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4 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해당 분과위원회의 신규등록 안건이 의결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7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정인준 안건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5 조(의결 및 정인준)

①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정인준 안건은 하반기 정기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찬성률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동아리연합회가 제공 가능한 공실의 수만큼 찬성률이 높은 순으로 동아리를 선정하고, 의결을 진행한 차기 연도 1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동아리에게 정인준 중앙동아리 자격을 부여하며 공실을 동아리방으로 배정한다.
④ 전항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동아리는 기존 가인준 자격을 유지한다.
⑤ 정인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동아리의 가인준 자격 또한 해소되며 1년간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제 5 절 등록해지

제 146 조(정의)

등록해지라 함은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가 등록 상태를 자진하여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147 조(구비서류)

등록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동아리 해체사유서
2. 해당 중앙동아리 소속 회원 과반수의 동의 서명

제 148 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제 147 조(구비서류)에 의거한 서류가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7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앙동아리 등록해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0 장 중앙동아리 지원

제 1 절 지원의 종류와 원칙

제 149 조(종류)

중앙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은 교비 지원금(행사지원금)에 한한다.

제 150 조(교비지원금 지원의 원칙)

① 본 회 소속 중앙동아리는 학교 교비 지원금을 반드시 본회를 경유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② 교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중앙동아리 활동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대표하여 출전 · 출연하는 대회, 경기, 공연
3. 분과위원장의 주관 아래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대다수의 중앙동아리가 참여하는 연합행사
4. 중앙동아리 활동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해당 중앙동아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항목 ③ 교비 지원은 반드시 행사허가원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④ 중앙동아리에 대한 교비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될 수 없다.

1. 중앙동아리 일상 활동
2. 중앙동아리 내부 친목 활동(MT, 홈커밍데이 포함)
3. 중앙동아리 내부 소모품 및 다과비, 식비
4. 해당 중앙동아리의 활동 목적 및 내용과 다른 항목

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 기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교비지원규칙」을 따른다.

⑥ 기타 분과 특성에 맞는 지원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분과규칙에 따른다.

제 2 절 지원의 절차와 정산

제 151 조(행사허가원 제출)

① 중앙동아리의 행사 지원금은 반드시 본 회가 공고한 행사허가원 양식에 따른다.

② 교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중앙동아리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과 예산안을 논의한 후에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2 조(교비지원액 결정)

① 행사허가원을 접수한 분과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비 심의 안건을 정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동아리 소속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교비 지원액을 해당 중앙동아리에 통보한다.

제 153 조(정산)

① 교비 지원금을 수령한 중앙동아리는 행사 허가원에 기재된 행사 종료일 3 주 이내에 정산내역서와 증빙자료 및 영수증을 해당 분과 분과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통과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③ 교비 지원금을 수령한 중앙동아리가 본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중앙동아리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12 장 「징계」에 따른다.

제 11 장 공간 운영

제 154 조(공간의 정의)

①'공간'이라 함은 본회 회원 및 중앙동아리가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동아리연합회가 학교로부터 공간 운영권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이전받은 학내 모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된다.

1.'배정공간'이라 함은 동아리연합회가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기존에 배정받았던 공간이다.
동아리연합회실, 각 중앙동아리 자치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2.'대여공간'이라 함은 각 단위가 동아리연합회에 대여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동아리연합회가 시간에 따른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 내 일반 강의실, 동아리연합회 세미나실이 이에 해당된다.

②'공간배정'이라 함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중앙동아리에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공간조정'이라 함은 당초 배정된 공간이 사용주체 및 공간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는 공간 내부의 상당부분이 시설공사를 통하여 구획 및 형태(마감재 변경)등이 변경됨을 말한다.

제 1 절 배정공간

제 155 조(배정공간관리 원칙)

① 본회의 배정 공간에 대한 대여 권리는 정인준 동아리만 가진다. 단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동아리연합회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실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동아리연합회장이 가진다. 단, 동아리연합회실 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할 수 있다.

③ 본회에 소속된 모든 중앙동아리는 배정받은 공간을 임의로 조정·변경·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본회에 소속된 모든 중앙동아리는 배정받은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⑤ 공간 배정과 관리에 대한 모든 논의는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로 정한다.

제 156 조(배정공간의 조정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새롭게 인준 받은 중앙동아리에 중앙동아리 자치 공간을 배정할 의무를 진다.
단, 본회의 배정공간 소유 현황에 따라 새롭게 정인준 된 중앙동아리에 자치 공간의 배정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류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신·증축으로 새롭게 생겨난 자치 공간의 운영권을 학교로부터 이관 받거나, 정인준 중앙동아리의 제명으로 인해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경우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잔여 자치공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57 조(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

① 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배정공간의 운영권을 동아리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아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한다.

②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중앙동아리가 동아리연합회로부터 자치공간의 운영권을 이관받기 이전에 있었던 자치공간의 소유물과 건물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아리는 분과위원장을 통해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원회

는 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8 조(행위제한)

배정공간사용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의 명칭 및 용도의 무단 변경
2. 공간의 무단 분할·합병 및 이전 등
3. 위험물의 제작·사용 및 보관
4. 시설물 구조에 무리를 가하는 진동·충격 등의 실험실습 및 행위
5. 기준 적재하중 이상의 물품의 실내반입 및 적재
6.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 지나친 음주, 소음발생 및 기타 문란한 행위
7. 시설물 파손
8.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 159 조(위반자 및 위반 중앙동아리에 대한 조치)

① 제 151 조(배정공간관리 원칙)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54 조(행위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동아리연합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내에 2 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특정 공간의 회수가 결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당 공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공간정보(호수, 공간명 등)
2. 공간회수사유
3. 공간회수일자
4. 공간회수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 2 절 대여공간

제 160 조(대여 신청)

대여공간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과 및 중앙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동아리연합회실에 비치한 양식에 대여 내용을 기입한 후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한다.

제 161 조(대여공간관리 원칙)

① 본회의 대여 공간에 대한 대여 신청은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동아리가 할 수 있다.

② 본회에 소속된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임의로 조정·변경·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회에 소속된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 162 조(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

① 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집행위원회가 한다.

② 공간대여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3 조(이용수칙)

대여공간을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한다.

1. 수업 및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
2. 이용시간을 엄수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3. 각 공간에 적합한 해당 복장을 갖출 것
4.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5. 공간 내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공간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할 것
7. 고성방가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8.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9. 기타 대여공간 개별 이용수칙

제 164 조(위반자 및 위반 중앙동아리에 대한 조치)

① 제 157 조(대여공간관리 원칙)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59 조(이용수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내에 2 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운영위위원회의 의결 통하여 일정 기간 대여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12 장 징계

제 165 조(징계)

① 중앙동아리가 본 회의 회칙 및 세칙, 부수 규칙을 위반하거나 중앙동아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징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166 조(징계 발의)

① 주의, 경고 징계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중앙동아리가 속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발의하거나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할 수 있다.

② 제명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장이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67 조(징계 의결)

① 주의, 경고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징계안건의 의결 즉시 해당 중앙동아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명 징계에 대한 의결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한다.

제 168 조(이의제기)

① 주의, 경고 징계가 부과된 중앙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장의 통보 후 24 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접수와 즉시 해당 징계의 효력은 유보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중앙동아리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3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의제기가 없거나 재심의에서 해당 징계가 재의결되면, 그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명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징계안건의 발의 이후부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당일까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발의에 대한 재심의를 통하여 제명 안건 발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 182조(시정명령)

① 중앙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시정명령 1회 징계를 부과한다.
1. 동아리연합회칙 제157조(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를 위반한 경우
2. 동아리연합회칙 제158조(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3. 동아리연합회칙 제161조(대여공간관리 원칙)를 위반한 경우
4. 동아리연합회칙 제163조(이용수칙)를 위반한 경우
5. 제출 서류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6. 제출 서류가 자필 작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정명령 징계의 효력은 당해 학기로 한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동아리연합회 온· 오프라인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183 조(주의)

① 중앙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할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 회 징계를 부과한다.
1. 정기 분과위원회 회의에 2 회 이상 대리인 파견 없이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2. 제 31 조(대의원) 제 3 호에서 규정한 중앙동아리의 대표가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3 회 연속 불참할 경우(대리인을 파견한 경우도 포함한다.)
3. 등록 갱신 서류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4. 선거인단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 한 중앙동아리의 활동과 내용이 타 중앙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침해하는 경우
6. 교비지원금을 행사 허가원에 기재된 종료일 이후 3 주 이내에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7. 중앙동아리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8. 제 182조(시정명령)에 규정된 시정명령이 2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9. 교비지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징계 사항
10. 24시 이후 국제학사 출입 시,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아리 활동목적과 무관한 사유로 작성한

사례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총 6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② 주의 징계의 효력은 1 년(2 학기)으로 한다.

제 170 조(경고)

① 중앙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할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 경고 1 회 징계를 부과한다.

1. 주의 1 회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당 내용이 1 주 이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2. 주의 징계가 2 회 누적 되었을 경우
3. 교비지원금을 행사허가원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행사를 수행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4. 중앙동아리 회원이 15 인 미만이거나 중앙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 교비지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항

② 제 1 항의 징계가 이루어진 후 해당 내용이 1 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고 1 회 징계가 자동으로 추가된다. 단, 제 1 항 제 4 호의 경우는 시정 기간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경고 징계의 효력은 2 년(4 학기)으로 한다.

④ 경고 1 회의 징계를 받은 중앙동아리는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 동아리연합회에서 지급하는 자치회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본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2 주간 부착하도록 한다.

⑤ 경고 2 회의 징계를 받은 중앙동아리는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 동아리연합회에서 지급하는 자치회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경고 효력이 지속되는 학기 동안 사전교비를 포함한 금전적 지원이 불가하다.

제 171 조(제명)

① 중앙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의결기구의 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되며, 동아리연합회장은 제명 이후 해당 사실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1. 경고 징계가 3 회 누적되었을 경우
2. 등록 갱신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제 62 조(징계 관련 권한)에 의거하여 구성한 조사단의 1 주일 이상의 조사 결과 중앙동아리 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결하였을 때

② 중앙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 162 조(징계발의)의 과정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1. 중앙동아리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지된 상태가 한 학기 이상 지속될 경우
2. 본회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3. 본회와 중앙동아리의 위신과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③ 제명 징계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명된 중앙동아리는 그 즉시 등록이 취소되며 2 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명된 중앙동아리는 제명 결정 후 7 일 이내에 동아리방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 13 장 선거

제 172 조(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본회의 정회원 중 각 중앙동아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동아리연합회장 후보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가 2 인 1 조 피선거인단으로 입후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장 후보 1 인만으로도 입후보 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와 전체 투표수 중 최다득표를 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인단 40% 이상의 투표와 전체 투표 수 중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 173 조(분과위원장 선거)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중앙동아리의 정회원 중 각 중앙동아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의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와 전체 투표수 중 최다득표를 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인단 50% 이상의 투표와 전체 투표 수 중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 171 조 제 5 항에 의거하여 출마한 분과위원장의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50%이상의 투표와 전체 투표 수 중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표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 174 조(시기)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그 임기 개시 전년도 11 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 세부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75 조(선거권·피선거권)

① 본회의 선거권은 각 중앙동아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게 있다. 단, 선거인단은 본회의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② 선거인단은 각 중앙동아리당 5 명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선거에 대하여 동일한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동아리연합회장 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는 2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중앙동아리 활동을 동아리연합회장 정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정후보는 1 학기 이상 지속해온 자. 단, 반드시 회원 명부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④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분과위원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2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중앙동아리 활동을 1 년(2 개 학기) 이상 지속해온 자. 단, 반드시 2 개 학기 이상의 명부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 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⑤ 11 월 분과위원장 선거가 무산되어 3 월에 분과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본 회의 집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 인이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해당 재선거에 제 4 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 입후보 할 경우 해당 집행위원의 입후보는 무효처리 된다.

1. 본 회에서 3 개월 이상 집행위원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3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

⑥ 제 5 항에 의거하여 당선된 분과 위원장은 집행위원직에서 사임할 경우 분과위원장직 또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 176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⑤ 선거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장단, 분과위원장,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7 조(보궐선거)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이 탄핵·사고·사퇴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230 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부터 48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178 조(재선거)

제 174 조(시기) 제 1 항에 의한 동아리연합회장단, 분과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무효 확정,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혹은 사퇴, 당선인 부재 등의 사유로 무산될 경우 익년도 3 월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제 179 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장 회칙 세칙 규칙

제 1 절 회칙 제·개정

제 180 조(제·개정안 발의)

① 회칙 제·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제·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연서자의 이름, 소속 중앙동아리,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발의인

제 181 조(제·개정안 공고)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제·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 176 조(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 182 조(제·개정안 심의)

① 제 180 조(제·개정안 발의)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회칙 제·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제 1 항의 회칙 제·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83 조(제·개정안 의결)

①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제·개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4 조(회칙 정리)

회칙개정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회칙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85 조(공포)

① 회칙 제·개정이 의결되면 동아리연합회장은 7 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회칙 제·개정의 공포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 176 조(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또는 그 명단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포문은 동아리연합회실 및 각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회칙 제·개정은 세칙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 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 186 조(효력)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 169 조(공포) 제 1 항에 따른 공포일을 부칙에 명시하고 부칙에 명시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절 세칙・규칙・분과 규칙

제 187 조(세칙·규칙)

① 본회는 회칙에 의하여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의하여 규칙을 제·개정한다. 단, 회칙에 근거한 규칙과 분과위원회 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분과위원회 규칙이 본 회칙 및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을 통해 해당 규칙을 삭제하고 해당 규칙의 효력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

제 188 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③ 세칙의 오탈자 수정 또는 명백한 모순점의 정정을 위한 개정안은 일괄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9 조(회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회칙에 부수된 규칙(이하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의결기구에 관련된 사항
2. 집행기구에 관련된 사항
3. 분과위원회 및 중앙동아리의 편제 관련된 사항
4. 본회의 정기사업·비정기사업에 관련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
6. 교비지원금, 학교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7.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8. 본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9. 본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10.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
11.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일반규칙은 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로도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0 조(분과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분과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교비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소속 중앙동아리에 관련된 사항
3. 분과의 정기사업·비정기사업에 관련된 사항
4. 교비지원금, 학교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5. 분과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분과규칙은 각 분과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되 운영위원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로도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1 조(효력)

세칙·규칙 제·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과 동시에 부칙에 그 시행일시를 명시하고 부칙에 명시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절 해석·규정집

제 192 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가 해당 회칙의 해석을 주 안건으로 하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③ 본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회칙의 해석을 위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칙·규칙 및 분과위원회 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제 193 조(규정집)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내용 중 제·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분과규칙

② 제 1 항의 규정집은 집행위원회가 편찬·배포를 담당한다.

부칙

본 회칙은 공포 후 2026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